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안 국회통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정안이 '99년 1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충분한 시장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위주의 표시·광고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며, 동 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사후시정하는 데 그치는 공정거래법과는 달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촉진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정위가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에 반드시 포함토록 하는 「중요정보 공개제」와

광고주가 사실을 주장하는 광고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갖추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게 하는 「광고실증제」,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불특정다수인의 피해를 신속히 방지토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소비자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된 표시·광고법은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法律 第 號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商品 또는 用役に 관한 表示·廣告에 있어서 消費者를 속이거나 消費者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表示·廣告를 방지하고 消費者에게 바르고 유용한 情報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公正한 去來秩序를 확립하고 消費者를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表示”라 함은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商品 또는 用役(이하 “商品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目の 사항을 消費者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商品등의 容器·包裝(添附物 및 內容物을 포함한다) 또는 事業場 등에 設置한 표지판에 쓰거나 붙인 文字나 圖形 및 商品의 特性을 나타내는 容器·包裝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事業者·事業者團體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事業者·事業者團體의 商品등의 내용·去來條件 기타 그 去來에 관한 사항
2. “廣告”라 함은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商品등에 관하여 第1號 各目の 사항을 新聞·放送·雜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消費者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事業者”라 함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를 말한다.
4. “事業者團體”라 함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를 말한다.
5. “消費者”라 함은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이하 “事業者등”이라 한다)가 生産 또는 제공하는 商品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者를 말한다.

第2章 부당한 表示·廣告行爲의 금지 등

第3條(부당한 表示·廣告行爲의 금지) ① 事業者등은 消費者를 속이거나 消費者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表示·廣告行爲로서 공정한 去來秩序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事業者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表示·廣告
2. 기만적인 表示·廣告
3. 부당하게 비교하는 表示·廣告
4. 비방적인 表示·廣告

② 第1項 各號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중요한 表示·廣告事項의 告示)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商品등이나 去來分野의 성질에 비추어 消費者保護 및 公正한 去來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그 사항이 表示·廣告事項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表示·廣告事項에 포함시킬 사항을 告示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令에서 表示·廣告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다.

1. 消費者의 被害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被害의 事後救濟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
2. 消費者가 商品등의 중대한 缺陷 또는 機能上的 限界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알지 못한 사정이 購買選擇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
3. 기타 공정한 去來秩序를 현저히 저해하는 문제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公聽會를 開催하여 관련 事業者團體, 消費者保護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消費者團體(이하 “消費者團體”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事業者등은 表示·廣告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表示·廣告事項이 포함되게 하여야 한다.

第5條(表示·廣告內容의 實證 등) ① 事業者등은 자기가 행한 表示·廣告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등이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할 憂慮가 있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事業者등에게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證資料의 제출을 요청받은 事業者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實證資料를 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는 正當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商品등에 관하여 消費者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去來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이 제출한 實證資料를 비치하여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公開할 수 있다. 다만, 그 資料가 事業者등의 營業上的 秘密에 해당하여 그 公開가 事業者등의 營業活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條(事業者團體의 表示·廣告制限行爲의 금지) ① 事業者團體는 法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事業者團體에 加入된 事業者에 대하여 表示·廣告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消費者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公정한 去來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團體의 表示·廣告制限行爲를 인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定款·規約 등의 변경
3. 기타 위반행위의 是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第7條(是正措置)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등이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당한 表示·廣告行爲를 하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등에 대하여 그 是正을 위한 다음 各號의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法違反事實의 公表
3. 訂正廣告
4. 기타 위반행위의 是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法違反事實의 公表 및 訂正廣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臨時中止命令)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表示·廣告行爲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事業者등에 대하여 당해 表示·廣告行爲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表示·廣告行爲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疑心될 것
2. 당해 表示·廣告行爲로 인하여 消費者 또는 競爭事業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損害가 발생할 憂慮가 있어 이를 豫防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消費者團體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團體는 事業者등의 表示·廣告行爲가 第1項 各號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書面으로 公正去來委員會에 당해 表示·廣告行爲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는 지체없이 서울高等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서울高等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하여 裁判을 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裁判을 함에 있어서는 非訟事件節次法 第15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9條(課徵金)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表示·廣告行爲를 한 事業者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分の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者가 賣出額이 없거나 賣出額의 算定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이거나 事業者團體인 경우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者의 表示·廣告行爲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事業者團體에 대하여는 5億원의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 ④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事業者인 法人이 合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이 행한 위반행위는 合併후 存續하거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행한 행위로 보아 課徵金을 賦課·徵收한다.
- ⑤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3 章 損害賠償

第10條(損害賠償責任) ① 事業者등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당한 表示·廣告行爲를 함으로써 被害를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被害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는 事業者7등은 그 被害者에 대하여 故意 또는 過失이 없음을 들어 그 責任을 免할 수 없다.

第11條(損害賠償請求權의 裁判上의 主張制限 등) ①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를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裁判上 主張할 수 없다. 다만, 이는 民法 第750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年을 경과한 때에는 時效에 의하여 消滅된다.

第 4 章 補 則

第12條(秘密嚴守의 義務) 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公正去來委員會의 委員·公務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事業者등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외의 用途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3條(表示·廣告를 금지·제한하는 法令 制定 등의 協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事業者등의 表示·廣告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法令을 制定 또는 改正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第14條(表示·廣告의 自律規約) ① 事業者등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自律的으로 表示·廣告에 관한 規約을 정할 수 있다.

② 事業者등은 公正去來委員會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律規約이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律規約의 審査를 요청받은 때에는 審査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審査結果를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5條(關係機關 등의 長의 협조)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 기타의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 기타의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調査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6條第3項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 기타의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金融·保險事業者 등이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어 職權으로 調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調査하지 아니하고 金融監督委員會에 통보하여 金融監督委員會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保險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公正去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16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의 準用) ①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42條 내지 第45條 및 第52條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業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며,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53條·第53條의2·第54條·第55條 및 第55條의2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처분(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中止命令을 제외한다)에 대한 異議申請, 訴의 제기, 불복의 訴의 專屬管轄 및 事件處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49條의 規定은 이 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認知·申告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며,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50條 및 第51條의 規定은 公正去來委員會의 調査·意見聽取 및 是正勸告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55條의4 및 第55條의5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한 課徵金納付期間의 연장 및 課徵金の 徵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며,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71條의 規定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告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 5 章 罰 則

第1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당한 表示·廣告行爲를 하거나 또는 다른 事業者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事業者등
2. 第6條第3項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第18條(罰則)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9條(兩罰規定) 法人(法人格없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0條(過怠料) ① 事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億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하며, 法人 또는 事業者團體의 任員 또는 從業員 기타 利害關係인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告示된 表示·廣告事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者
2.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實證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3.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臨時中止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4.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50條第1項第1號의 規定

- 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者
5.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50條第1項第3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資料나 물건을 제출한 者
 6.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②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43條의2의 規定에 의한 秩序維持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⑥ 第5項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是正措置·課徵金 및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종전의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23條第1項第6號 및 第26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是正措置·課徵金 및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公正競爭規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23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審査를 받은 表示·廣告에 관한 公正競爭規約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받은 表示·廣告의 自律規約으로 본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6號를 削除하며, 同條第4項중 “부당한 顧客의 誘引과 허위 또는 消費者를 欺瞞하거나 誤認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廣告를”을 “부당한 顧客誘引을”로 한다.

第24條중 “契約條項의 削除, 訂正廣告”를 “契約條項의 削除”로 한다.

第26條第1項第5號를 削除한다.

第27條중 “행위의 중지, 訂正廣告”를 “행위의 중지”로 한다.

② 不正競爭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중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을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表示·廣告의 公正化에 관한法律”로 한다.

第5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